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4,400,516	10,032,015
일반회계	312,244,815	9,367,344
특별회계	22,155,701	664,671
기타특별회계	22,155,701	664,67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547,530	106,42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02,590	21,078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7,421,241	222,637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739,981	22,199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30,959	21,929
수질개선 특별회계	5,579,990	167,400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3,210,000	96,300
기반시설 특별회계	223,410	6,70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91,18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